

[ 불 임 ]

동탄2신도시 A102블럭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102블럭
- 공급규모 : 분양주택 총 874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총 공급 874세대 중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일반특별공급 4세대

| 구 분          |                                          | 84-796A | 84-392B | 계 |
|--------------|------------------------------------------|---------|---------|---|
| 기관추천<br>특별공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br>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br>장기복무군인 | 2       | 2       | 4 |

※ 신청자가 공급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일정계획

| 구 분      | 일 자               | 참 고 사 항                    |
|----------|-------------------|----------------------------|
| 건본주택 개관  | 2013. 03. 15 (예정)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358-27번지   |
| 특별공급 신청일 | 2013. 03. 19 (예정) | 건본주택 방문접수<br>(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 위 일정 및 계획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2013.03.14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청약예금 :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 광역시 | 일반 시군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장애인 특별공급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포함

※ 세대원 기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 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 당함)

|                |                                                                              |
|----------------|------------------------------------------------------------------------------|
| 주인등분증 또는 공전면허증 |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의 경우                          |
| 주민등록표초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이전신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함        |
| 주민등록표등본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을 추가 제출                   |
| 인간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청약내용확인확인서      | • 청약물건 가입금액(중소기금로자, 본인에 한함)                                                  |
| 무주택서약서 및 인증서류  | • 무주택서약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전분주택)에 비치 인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특별공급신청서        | • 신청일에 신청장소(전분주택)에 비치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을)

분류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서류 및 인자, 세대주의 관계 포함하여
- 본인 및 배우자 이하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아래 원고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아래의 제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원(2013.03.14 예정) 이후 발급본에 한함

III. 신청서 기재사항

[미신청시 청약자 선정(등, 호수 배정) 및 계약불가]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서 기재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도
-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